

인천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1가단20567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곡

담당변호사 김민섭

변 론 종 결 2021. 4. 15.

판 결 선 고 2021. 6.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732,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가. 1) 기술보증기금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대출받게 될 중소기업자금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① 2019. 6. 27. 보증금액 6,300만 원, 보증기한 2020. 6. 26.까지로 된 신용보증약정, ② 2020. 4. 21. 보증금액 252,450,000원, 보증기한 2021. 4. 21.까지로 된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 2) A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9. 7. 17. 7,000만 원, 2020. 4. 24. 2억 9,7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는데, A이 2020. 6. 17. 인천지방법원 2020간회합1006호로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함에 따라 같은 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 3)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은행의 보증사고통지를 받고, 2020. 7. 22. 중소기업은행에 원금 315,450,000원(= 2019. 7. 17.자 대출에 대한 보증잔액 6,300만 원 + 2020. 4. 24.자 대출에 대한 보증잔액 252,450,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 1,856,912원을 합한 317,306,91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020. 7. 22.를 기준으로 한 기술보증기금의 채권액은 314,285,812원(= 2019. 7. 17.자 대출 관련 대위변제금 60,162,170원 + 2020. 4. 24.자 대출 관련 대위변제금 254,123,642원 + 추가보증료 73,350원 + 법적절차비용 954,850원)이다.
- 나. 1) A은 2020. 5. 1. A의 이사인 피고와 시흥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5,000만 원(계약금 500만 원, 잔금 1억 4,5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20. 5. 15.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 A,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 1억 8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는 2020. 5. 15. 주식회사 F(이하 'F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억 1,200만 원을 대출받아 중소기업은행에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잔액 90,267,140원을 지급하여 같은 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피고는 같은 날 A에 잔금 중 21,490,341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F은행, 채권최고액 1억 2,32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피고는 A에 2020. 7. 9. 23,739,505원, 2020. 8. 24. 14,359,998원을 매매잔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1) A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중소기업은행 등에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2) 기술보증기금은 2020. 8. 5. 이 사건 매매계약이 A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중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제외한 부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그런데 A은 2020. 9. 28. 인천지방법원 2020하합33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2020. 11. 26.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4) 원고는 A에 대한 파산선고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고, 이 사건 소를 민법상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상 부인의 소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는 2021. 1. 13. 피고의 대리인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일 무렵부터 원고의 부인권 행사 무렵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억 5,00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부인

1)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가 포함되고(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558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 것’이라는 사해의사는 채무자가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당시에 그 행위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이 감소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사해행위의 주관적인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그러한 사실을 채권자가 알게 된 때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당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때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2606, 261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유지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경우와는 달리, 이른바 편파행위까지 규제 대상으로 하는 채무자회생법의 부인권 제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당 행위 당시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다고 볼 필요가 없고, 행위 당시 자산 초과 상태였다 하여도 장차 파산절차에서 배당재원이 공익채권과 파산채권을 전부 만족시킬 수 없는 이상, 그리고 그러한 개연성이 존재하는 이상, 부인권 행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다5788 판결 등 참조).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그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56644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4503 판결 등 참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A과 기술보증기금 사이에 이미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20. 5. 1.로부터 불과 1달 17일이 지난 2020. 6. 17. A의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으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기술보증기금의 구상금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0. 7. 22. 기술보증기금이 A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기술보증기금의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부인 대상 행위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는데, 피고는 A의 이사로서 A의 재정 상황을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매매계약 체결 시점 역시 A이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기 불과 1달 17일 전인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상적인 부동산 매매와 달리 잔금이 모두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데, 잔금 중 14,359,998원은 당초 피고가 A으로부터 받을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였다가 이 사건 소제기 이후 피고가 A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은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재산이 감소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 대상 행위가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A이 변제 자력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고, 부동산 매매대금 역시 그대로 보관 중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가 사해행위가 되지 않으려면 부동산의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 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 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여야 하나(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참조), A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것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

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거나, 매매대금 중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대출금을 변제하고 남은 돈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 변제 자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피고와 A의 관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과 그 대금이 지급되는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A은 채권자 중 일부인 피고와 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부인에 따른 원상회복

1) 관련 법리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고, 그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참조).

한편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그 원상회복의 범위는 공동담보가액과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의 채권액 중에서 적은 금액이 된다.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회생법상 부인의 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만 채권자취소권은 재판상 청구로 행사하여야 하고, 채권자취소소송은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형성소송이어서 그 취소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는 데 반하여, 부인권 행사의 효력발생시기는 부인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이므로, 부인권 행사로 인한 배상액 산정의 기준시는 부인권 행사시로 봄이 타당하다. 채무자회생법 제397조 제1항의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은 부인된 행위가 없었던 원상태로 회복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소로써 부인권을 행사함과 아울러 원상회복으로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채무자는 그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체책임을 진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488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말소되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F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새롭게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부인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원고의 부인권 행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1억 5,000만 원이고,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될 무렵 그 피담보채무 잔액이 90,267,140원인 사실, 2020. 7. 22.를 기준으로 한 기술보증기금의 A에 대한 구상금채권액이 314,285,812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1억 5,000만 원에서 위 90,267,140원을 공제한 59,732,860원(= 1억 5,000만 원 - 90,267,140원)과 기술보증기금의 위 피보전채권액 중 더 적은 금액인 59,732,860원의 한도 내에서 부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부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59,732,8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부인권을 행사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1.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화정